

『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8일

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에서는 '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개요

- 기 금 명 :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
 - 주관기관 : 경상북도
 - 조성근거 :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 - 출연금액 : 금228,000천원
 - 조성목표 : ('93~'17년)2,000억원 → ('22년까지)2,500억원 이상
 - 조성기간 : 2018년 ~ 2022년(5년간 연장)
 - 재 원 : 도, 시·군, 농·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
- ※ 출연근거 :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

○ 사업개요

1) 사업대상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인 단체, 농어업법인, 농어업관련기업체 또는 농·수협 등

2) 지원사업

-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-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
-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-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
-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-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
-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-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

3) 지원기준 및 조건

- 지원한도액
 - 개인 : 2억원 이하, 법인 : 5억원 이하
 - 기타(가공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) : 10억원 이하

- 지원형태 : 융자지원 100%
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
4) 사업추진절차

- '19. 10월 : 사업지원계획 시달(도)
- '19. 10~11월 :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(시)
- '19. 12월 :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(도)
- '20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(사업자⇒시)
- '20. 1~12월 : 사업완료확인서 발급(시)
- '20. 1~12월 : 융자실행(금융기관)

○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

1) 구미시 출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기관별	'93~'18년 출연실적	'19년 출연액	'20년 출연계획	비고
구미시	5,568	228	228	

2)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'18년까지	'19년	'20년
재 원 별	계	235,142	217,142	9,000	9,000
	도	55,893	50,893	2,500	2,500
	시·군	98,700	89,700	4,500	4,500
	농·수협등	20,893	18,893	1,000	1,000
	운영수익	59,656	57,656	1,000	1,000

3) 연도별 지원실적(구미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'96-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
농가수(호)	254	148	8	29	9	7	12	17	13	11
융자금액	26,262	13,846	742	1,651	1,390	795	1,980	2,014	2,124	1,720

○ 출연의 필요성

- 1)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'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
- 2)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○ 본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」 은,

-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기관별

출연액 협의결과에 따른 출연으로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
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
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